

의안번호	제916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발의자	조영명 의원 등 10명
발의연월일	2021. 11. 23.

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91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23.

발 의 자 : 조영명, 정길상, 최희정, 구점득,
박남용, 김인길, 이우완, 박현재,
박선애, 공창섭 의원

1. 주 문

제109회 창원시의회(제2차 정례회)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- 출석 기간 : 제109회 창원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시정질문 기간
- 출석 대상 : 시장, 제1부시장, 제2부시장, 실·국장, 직속기관의 장, 사업소장, 구청장
- 출석 장소 : 창원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

2. 제안이유

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74조 및 제75조

【 관련 법규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

제74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제75조(시정에 대한 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(이하 “시정 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시정질문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,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, 보충질문은 할 수 없다.

③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대상자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